

# 공 시 송 달

## - 재산압류사전에고통지 -

- 공고기간 : 2018. 12. 11. ~ 2018. 12. 25.
- 서류의명칭 :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
- 공고내용

연번	소유자현황		급수전위치	체납기간	체납액(원)				비고
	주소	성명			계	상수도 사용료	하수도 사용료	불이용 부담금	
1	울산 북구 산하중앙3로 142, 103동 3203호	전현수	울산 북구 청자1길 15	2018.03. ~2018.11.	556,470	330,780	199,990	25,700	

위 상하수도 사용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를 공고하오니,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(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, ☎052)229-5755)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
2018. 12. 11.

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

